

「2026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큐레이터·에듀케이터)」 지원관 3차 공모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2026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큐레이터·에듀케이터)> 지원관 3차 공모를 진행하니, 관심 있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

[필독]

이번 3차 공모의 지원 규모는 전문인력 2인이며, 짧은 지원기간(2026. 11. 1(예정) ~ 12. 31.) 및 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신규 지원신청은 단년 지원(2026년/신규관 포함)만 가능하며, 다년지원(2026~2028년)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다년지원관(2025년 선정/ 2025~2026년, 2025~2027년)의 경우, 현재 전문인력 1인 지원 중인 미술관에 한하여 1인 추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I.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에 '큐레이터·에듀케이터'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 3차 공모 신청 가능한 경우

- 1-2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관, 1-2차 공모 선정관 중 인력 미채용관 → '신규신청관' 선택
- 현재 전문인력 1명 지원 중이며, 인력 추가지원을 원하는 관 → '추가지원 희망관' 선택

*다만 기 결정된 미술관 지원기간(단년, 다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관의 지원 결정사항(지원 구분(경력관 또는 신규관) 및 지원 기간(1년~3년))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예시) -3년 지원 결정된 관이 3차공모에서 1년 지원 신청 : 불가(심사대상 제외)

-3년(또는 2년) 지원, 큐레이터(또는 에듀케이터) 1인 결정된 관이 3차 공모에서 큐레이터(또는 에듀케이터) 1명 추가 지원신청 : 가능

※ 3차 공모 신청 불가한 경우 : 현재 전문인력 2인 지원 중인 관

지원기관 요건	
일반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2)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한정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 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2) 공고일 기준,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상근학예사(*)가 있는 관 *상근학예사 자격요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위 ‘일반’과 동일)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전시, 교육, 연구, 컬렉션관리 등) 5년 이상 보유자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 관장(또는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전년도 평가 점수 최하위 관 (단년지원관 및 신규관은 지원 제외. 다년지원관은 지원 연장 불가)	

[참고1] 지원관 관리 기준(2025년 도입, 2026년 지속 시행)		
※ 지원관 관리 기준 미술관의 전문인력 지원사업 또는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경력관’과 ‘신규관’으로 구분. 단, 경력관은 자율성을 가지는 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유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경력관] 전년도(2025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3회 이상인 관 [신규관] 금년도(2026년) 인력지원사업 신규참여관(=금년도에 최초로 지원관 확정), 전년도(2025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2회 이하인 관		
*1개 관이 사업에 따라 경력관, 신규관에 모두 해당할 경우 : 각 사업별 해당하는 기준으로 관리 (예시 : 00미술관이 예비학예인력은 경력관, 전문인력은 신규관일 경우 → 예비 경력관, 전문 신규관 적용)		
< 경력관과 신규관 구분에 따른 처우표 >		
항목/구분	경력관	신규관
지원기간(미술관)	단년, 다년(3년) 지원 모두 가능 (전년도 평가 결과, 평가점수 최하위 관은 지원 불가)	단년 지원만 가능 (전년도 평가 결과, 평가점수 최하위 관은 지원 불가)
지원기간(지원인력) *금년도 기준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협회 주최 교육 참여	1) 협회 주관 교육	1) 협회 주관 교육

항목/구분	경력관	신규관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2)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2)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협회 지원 안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의무
지원인력 재택근무 관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1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 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 시는 협회와 협의),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 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 시는 협회와 협의),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국고보조금(급여지원금) 교부	1) 교부신청 : 1회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2) 교부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정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관이 선지급 권고)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1) 교부신청 : 1회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2) 교부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정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관이 선지급 권고)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항목/구분	경력관	신규관
월별 자료제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의무 : 급여명세서 -자유 : 업무일지(관 자체적으로 관리)	의무 -업무일지 -급여명세서
회차별 자료제출(근무실적포 트폴리오, 근무평가서)	의무	의무
평가 및 모니터링	경력관, 단년지원/다년지원 구분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신규관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참고2]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구분	세부 내용
① 지원인력의 월 급여액 중 일부 자부담	급여액 중 최소 '500,000원 이상/월' 자부담
② 지원인력의 4대보험 필수 가입 및 이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보험료	약 270,000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
③ 회계검증수수료	관별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e나라도움을 통하지 않고 각 관에서 별도로 납부

- 생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필수사용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관) 연차제도 시행 및 대체휴무 제공 등 권고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bojo.go.kr) 의무 사용
- 지원약정서 준수 의무(전문인력 업무 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 지원 규모 : 2명(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불문)

○ 지원 기간

[미술관] 금년도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음

- 지원기간 : 2026년 11월 1일(예정) ~ 12월 31일

*지원관 관리 기준(본 공고문 2~3p 참고1)에 따라 공모 시 단년(2026년) 또는 다년(2025년 선정된 기 지원관에 한함/2025~2026, 2025~2027년) 선택

※ 3차 공모 신청 가능한 경우

- 1-2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관, 1-2차 공모 선정관 중 인력 미채용관 → '신규신청관' 선택
- 현재 전문인력 1명 지원 중이며, 인력 추가지원을 원하는 관 → '추가지원 희망관' 선택

*다만 기 결정된 미술관 지원기간(단년, 다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관의 지원 결정사항(지원 구분(경력관 또는 신규관) 및 지원 기간(1년~3년))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예시) -3년(또는 2년) 지원 결정된 관이 3차공모에서 1년 지원 신청 : 불가(심사대상 제외)

-3년(또는 2년) 지원, 큐레이터(또는 에듀케이터) 1인 결정된 관이 3차 공모에서 큐레이터(또는 에듀케이터) 1명 추가 지원신청 : 가능

※ 3차 공모 신청 불가능한 경우 : 현재 전문인력 2인 지원 중인 관

[지원인력] 금년도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음

- **신규채용만 가능**하며, 금년도 지원기간(=근로기간)은 사업 기간과 동일한 2026년 12월 31일 까지임

(단, 다년지원관(3년) 지원인력의 차년도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기간 : 2026년 11월 1일(예정) ~ 2026년 12월 31일

※ 지원인력 최소 근무일수(2개월) 보장을 위해 2026년 11월 1일 근무 시작 필수

[인력 채용 시 필수 참고사항]

- 기간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관의 경우 1인이 1개 관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임 (24개월 초과 시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지원 중단)

○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정부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예술인 창작·복지 강화,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 문화 다양성 존중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 추진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집중으로 인해 지역 문화는 도태·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음
- 미술관은 K-컬처 확산 거점으로서 한류 음악·드라마·패션과 같은 대중문화와 전통·현대미술을 연결해 지역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공연 및 전시, 디지털아트, 메타버스 체험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 창출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확산하며, 지역 고유의 역사·예술을 K-컬처와 접목해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을 세계에 알려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에 전문인력인 큐레이터(학예사)와 에듀케이터(교육사)를 지원하여, 소외된 지역 예술가와 콘텐츠의 발굴·지원, 지역별 특화된 문화자원 활성화 등 지역 문화가치 발전 및 지역 문화의 도태와 불균형 해소에 기여

- 전문인력의 다년 지원을 통해 미술관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및 프로젝트 수립·실행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인력들은 장기 근무 보장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상승시키고 미술관의 역량 증진에 이바지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전문인력 자격요건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 학예사자격증(정1,2,3급 및 준학예사) 소지자	· 정1급 또는 정2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정3급 학예사자격증, 교사(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한정]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소지자
[※ 채용 불가 대상] 1)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등록 유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근학예사 포함) 2)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3) 4대보험 전체가입 불가한 자 (단, 조기연금 및 타 연금 수령자는 가능) 4)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자 · (예외)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③의 적격자가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경우만 허용함 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미술관, 또는 서울6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미술관(단, 군 단위 아하는 허용) / 둘 중 하나 충족 ② 미술관 자체 공모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無 ③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有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월 지원금액,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 급여

구분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관 자부담		급여액
			의무(*)	자율	
큐레이터	정1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2,160,000원	500,000원	∞	2,660,000원+∞
	정2급	2,054,000원			2,554,000원+∞
	정3급	1,948,000원			2,448,000원+∞
	준학예사	1,842,000원			2,342,000원+∞
에듀케이터	정1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2,160,000원	500,000원	∞	2,660,000원+∞

구분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관 자부담		급여액
			의무(*)	자율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정2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2,054,000원			2,554,000원+∞
	자격증(정3급 학예사, 교사(석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1,948,000원			2,448,000원+∞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1,842,000원			2,342,000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한정]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중 하나) 소지자	1,789,000원			2,289,000원+∞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27만원/월 내외, 두루누리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는 별도임.

*전문인력의 전문성, 능력 및 근무 여건에 따라 관 의무 자부담금(50만원) 외 관 재량으로 추가 지급 권장

*전문인력 지원 중 자격증 승급될 경우, 신규 자격증 발급일자부터 급여지원금 증액하여 지원함(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모두 해당)

※ 교통비 추가 지원 : 아래 ①, ② 지역에 소재한 미술관 지원인력 1인 당 월 10만원

① 2021.10.19.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89개소)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소)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구분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
부산	금정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경남	사천시, 통영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전북	익산시

② 교통이 불편한 지역(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제외) : 지원관 선정 시 결정

- 인력별 업무범위 : 2025년과 동일함(변경 없음)

II. 지원관 공모

- 공모 신청기간 : ~2026년 10월 8일(목) 오후6시까지 (기한 엄수/ 시간 외 제출은 접수 불가)
- 신청 구분

구분	세부 내용
추가지원 희망관 (=현재 전문인력 1인 지원 중인 관)	본 사업 전용메일(akpma2@hanmail.net)로 접수 (※기존 지원관도 심사 후 선정함)
신규 신청관 (=미지원관)	e나라도움(www.bojo.go.kr) 공모창을 통한 신청 필수 (※공모명 : 2026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3차 공모)

○ 제출서류

※ 본 공고문 2-3페이지 '지원관 관리 기준' 및 위 신청 구분에 따라, 각 관이 해당하는 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다만, 현재 전문인력 1인 지원 중인 관은 기 결정사항에 따라 신청 필수

구분	세부 내용
신규관	① 3차공모_기관지원신청서(신규관) (별첨2-1)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동의서 3종 (별첨3)

구분	세부 내용
	⑤ 지원사업 신청자격 협약서 (별첨4) ⑥ 미술관의 각종 매뉴얼(*)
경력관 단년 지원	① 3차공모_기관지원신청서(경력관 단년지원) (별첨2-2)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동의서 3종 (별첨3) ⑤ 지원사업 신청자격 협약서 (별첨4) ⑥ 미술관의 각종 매뉴얼(*)
경력관 다년 지원	① 3차공모_기관지원신청서(경력관 다년지원) (별첨2-3)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동의서 3종 (별첨3) ⑤ 지원사업 신청자격 협약서 (별첨4) ⑥ 미술관의 각종 매뉴얼(*)

*미술관의 각종 규정·매뉴얼은 필수 제출 사항임. 단, 관별로 일부 사용하지 않는 규정·매뉴얼이 있을 수 있는 점(기관지원신청서(별첨2-1~3)의 IV.미술관 현황 > 1. 미술관 일반 현황 내 '운영 관련 각종 규정 구비 여부'에서 '무' 선택한 경우)은 심사 시 감안함

※ 제출문서에 기관장 확인 및 날인 필수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협회가 제시한 작성 방법 및 발급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시 감점 혹은 심사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 확인 필수

○ 지원관 선정 심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일부 관은 현장조사 병행할 수 있음)
- 심사기준

*아래 심사기준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단년지원관 선정심사 기준

심사기준	유형	항목	배점
미술관 역량 (25)	정성 (정량 참고)	[지표1] 미술관운영 -운영규정·업무매뉴얼 작성 및 활용 -인력운영의 적절성(직제, 업무분장 등) -지원인력 사업 평가점수(최근 2년/정량*) -관람객 및 교육참여자 수(정량 참고)	15
	정성	[지표2] 미술관 환경 및 사회기여도 -지역의 미술관 역할 및 기여도(지역의 특성, 문화시설 인프라 환경 참 고)	10
미술관 활동 (20)	정성 (정량 참고)	[지표3] 전년도 미술관 활동 실적 -사업의 양과 질(정량 참고) -결과 및 파급효과	5
	정성	[지표4] 지원년도(2026)년 미술관 활동 계획	15

	(정량 참고)	-사업의 양과 질(정량 참고)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인력운영 (40)	정성	[지표5] 전문인력(큐레이터·에듀케이터) 활용 계획 -구체적인 담당/연계 업무 -협력·소통·평가 등	10
	정성	[지표6] 인력의 전문성·역량 향상 및 경력개발 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10
	정성	[지표7] 지원인력의 관리체계 및 환경 -인력관리 운영 및 관리체계 -인력 관리자의 적절성, 전문성, 연속성 -근무환경(공간, 비품, 시설제반)	15
	정성	[지표8] 인력 지원의 형평성 -미술관 규모, 사업(질과 양 참고)대비 지원인력 및 근무자수	5
환경·행정 (15)	정량	[지표9] 6개월 이상 지속근무한 미술관 근로자 수 *조회기간 : 2026.1.1.~2026.9.30.까지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제출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5
	정량	[지표10] 미술관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제출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정량	[지표11] 지원사업 행정업무 역량 -전년도 업무 연결체계, 결과보고서 및 시간(또는 기간) 준수 등 -교육참여 등 (* 인력지원사업 최초 신청인 경우 최저 점수 : 1점)	5
가산점 (15)	정량	2025년 동 사업 평가결과 *우수인력 배출 및 우수관은 최고점(5점) *가산점 없음(0점 처리) :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관, 2025년 동 사업 지원 실적에 없는 관, 지원관이었으나 중도퇴사 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관	5
	정량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관	5
	정량	2025년 특별재난지역	5
합계(최대점수 기준)			115

2) 다년지원관 선정심사 기준

심사기준	유형	항목	배점
미술관 역량 (25)	정성 (정량 참고)	[지표1] 미술관운영 -운영규정·업무매뉴얼 작성 및 활용 -인력운영의 적절성(직제, 업무분장 등) -지원인력 사업 평가점수(최근 2년/정량*) -관람객 및 교육참여자 수(정량 참고)	15
	정성	[지표2] 미술관 환경 및 사회기여도 -지역의 미술관 역할 및 기여도(지역의 특성, 문화시설 인프라 환경 참고)	10
미술관 활동 (20)	정성 (정량 참고)	[지표3] 전년도 미술관 활동 실적 -사업의 양과 질(정량 참고)	5

		-결과 및 파급효과	
	정성 (정량 참고)	[지표4] 지원년도(3년/2025~2027년, 2026~2028년) 미술관 활동 계획 -사업의 양과 질(정량 참고)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15
인력운영 (40)	정성	[지표5] 전문인력(큐레이터·에듀케이터) 활용 계획 -구체적인 담당/연계 업무 -협력·소통·평가 등	10
	정성	[지표6] 인력의 전문성·역량 향상 및 경력개발 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10
	정성	[지표7] 지원인력의 관리체계 및 환경 -인력관리 운영 및 관리체계 -인력 관리자의 적절성, 전문성, 연속성 -근무환경(공간, 비품, 시설제반)	15
	정성	[지표8] 인력 지원의 형평성 -미술관 규모, 사업(결과 양 참고)대비 지원인력 및 근무자수	5
환경·행정 (15)	정량	[지표9] 6개월 이상 지속근무한 미술관 근로자 수 *조회기간 : 2026.1.1.~2026.09.30.까지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제출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5
	정량	[지표10] 미술관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제출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정량	[지표11] 지원사업 행정업무 역량 -전년도 업무 연결체계, 결과보고서 및 시간(또는 기간) 준수 등 -교육참여 등 (* 인력지원사업 최초 신청인 경우 최저 점수 : 1점)	5
가산점 (15)	정량	2025년 동 사업 평가결과 *우수인력 배출 및 우수관은 최고점(5점) *가산점 없음(0점 처리) :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관, 2025년 동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관, 지원관이었으나 중도퇴사 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관 *다년지원이 종료된 경우만 해당	5
	정량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관	5
	정량	전년도 특별재난지역	5
합계(최대점수 기준)			115

[참고]

- [지표9], [지표10]는 미술관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경우 2점 감점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지표9], [지표10] 점수 산출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협회 지원 전문인력 및 예비학예인력은 숫자에서 제외

※ 지원관 선정심사 시 고려사항

-전년도(2025년) 본 사업 우수관 및 우수인력을 배출한 관

(*단년 지원관이 차년도(2026년)에 단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년도 지원관 자동 선정)

-상근학예사가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인 관은 심의위원회 면담 후 지원 여부 결정

- 심사 결과발표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동 사업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미술관 운영 또는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관, 동 사업 외 타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관은 시정 또는 개선 전까지 지원 배제
- 동 사업 및 타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 포함, e나라도움시스템에 의한 지적사항 발생관은 2년간 지원 유예

Ⅲ. 사업 추진 일정 및 문의처 등

- 사업 추진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정	비 고
지원관 공모	~10월 8일(목) 오후 6시까지	
지원관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10월 2주 중	일부 관 현장조사 병행할 수 있음 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선정관 인력모집 안내 및 채용결과 협회 제출	10월 2주 ~ 4주	· 지원관 발표 직후 인력 모집 시행 · 선정관 발표 시 협회가 안내하는 모집공고문을 사용하여 공개모집 필수
협회와 운영심의위원회 검토 후 인력채용 확정 통보	10월 4주	
미술관 현장 근무 개시	11월 1일(예정)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2027년 1월 5주	

- ▶ 서류의 내용이 추후에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에 대한 반납조치함.

- 문의처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이정미 과장, 이승윤 주임, 안근홍 주임

tel. 02-735-4032, 02-735-4033, 02-732-4039

email. akpma2@daum.net(전문인력사업 전용메일)

IV. 유의사항

- 협회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선정관 공문 발송
- 선정관이 인력배치 후에라도 관리 미흡으로 중도퇴사 발생 또는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후보관으로 교체
- 협회는 본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할 경우 지원 미술관의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료 요청·실사·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경고·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 사항]

- 공모 지침 미숙지, 지원신청서 내용 누락, 오탈자 등 사업공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고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취소, 사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신청자가 공고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 및 제3자(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 사항]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 및 선정 확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자진 철회, 특별한 사유없는 사업 착수 지연, 사업계획 중대 변경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 이 경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환수 조치하며, 보조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취소 시 발생하는 모든 정산 및 행정 비용 또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민·형사상 문제, 환경 문제, 근로관계 문제 등 일체의 법적 및 재정적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으며,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선정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비예치형, 보텀e 등 불가)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사업관리를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

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